

#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 특수조건

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특수조건은 “강원대학교병원”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납품 단가계약에 관한 것으로 “강원대학교병원”과 (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)의 적정한 납품 단가계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,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## 제3조 (제품규격)

구 분	재 질	규 격(cm)	단위	도형색	비고
의료폐기물 전용용기	합성수지류	30 L	EA	황/적색	
		20 L	EA	적색	
		20 L	EA	황색	
		10 L	EA	황/적색	
		5 L	EA	황/적색	손상성용기 (사각)
		2 L	EA	황/적색	손상성용기 (사각)
		1 L	EA	황/적색	손상성용기 (사각)

- 가. 모든 전용용기에는 내부비닐을 포함한다. (단, 손상성용기는 제외한다.)
- 나. 전용용기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주머니등 불 침투성 재료로 된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- 다.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오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.
- 라.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제조한 구조·규격·품질 및 표시가 적합한 제품이여야 한다.

#### 제4조 (납품기한)

- 가. 납품 시기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월 2회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강원대학교병원의 긴급한 납품 요청 시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납품하여야 한다.
- 나. 납품은 납품 요청을 접수한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추가 납품한다.

#### 제5조 (납품 예상물량)

- 가. 납품 예상물량은 별첨. [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서]를 참조한다.
  - 나. 본 계약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 발주 물량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※ 코로나19 관련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납품 예상물량과 실제 발주물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#### 제6조 (납품과업)

- 가.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지정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,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담당자의 검수·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한 것으로 하며, 납품 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각 규격의 의료폐기물 내부비닐을 추가로 요청 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납품(반품)시 소요되는 운송비,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별도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강원대학교병원이 필요한 용량 및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납품해야 하며, 추후 강원대학교병원이 용기의 용량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전용용기 납품 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각 제품 규격과 동일하게 제출한다.
- 바. 부적합한 용기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- 사. 계약상대자는 당월 납품물량에 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결재대금청구서, 납품

현황표, 성적서,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.

아. 본 계약 체결 후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은 낙찰율을 적용한다.

### 제7조 (반품)

- 가. 제품이 불량인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은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, 환불 또는 제품교환은 다음 납품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나.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잘못 요청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.

### 제8조 (계약 해제 또는 해지)

- 가. 강원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지, 해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- 1) 계약 불이행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
  - 2)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  - 3)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지연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
  - 4) 강원대학교병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  - 5) 강원대학교병원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강원대학교병원의 고객 등 제 3자에게 중 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6) 계약상대자가 제 3자로부터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, 파산, 회사정리 절차 등의 신청을 받거나, 스스로 회사정리, 파산, 청산 절차의 신청을 하는 경우
  - 7) 계약상대자가 병합에 의한 해산 또는 그 영업의 전부,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  - 8) 계약상대자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
  - 9)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나. 계약상대자는 계약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일체의 손해에 대해 민사, 형사 및 행정상 등의 법적인 책임을 진다.

### 제9조 (기밀보장)

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기타 강원대학교병원의 권리 · 이익 또는 명예

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**제10조 (기타사항)**

- 가. 본 특수조건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대학교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대학교병원의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나.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강원대학교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